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2. 4. 13.(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효재 상임위원 (1인)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네 분 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6차, 제1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2022-18-06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3월 10일 고시 제·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국조실 규제심사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시 제·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개정입니다.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정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서 등록제 시행을 위한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요령, 서류 등에 관한 자구 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수립 내용입니다. 또한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출 부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정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내용입니다.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가중처분 시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을 권익위 지침에 따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내용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을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과과징금에 대한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입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22년 4월 20일 시행일에 맞춰 고시 제·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차관회의에서 특별한 당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서 이제 시장 진입은 완화되었지만 사후관리, 규제 이것이 큰 관건으로 남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고시 제·개정을 마지막으로 개정 위치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처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행일까지 잘 준비해서 원활한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4월 20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7분 폐회 】